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5년 하반기 개정판)

Part 3.

하도급법·상생협력법 해설
관련부서: 영업, 구매, 수행

Copyright © 2025 Hanwha Systems Co., Ltd.
All rights reserved.

사전 안내 사항

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한화시스템(주)의 모든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법규들을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들의 내용을 총 망라하여 정리한 회사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교과서이자 지침서입니다.

회사의 모든 임직원분들은 업무 수행 시 사전에 본 자율준수 편람을 활용하시어 해당 업무가 공정거래 법규 저촉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편람을 참고하시되, 상세 업무 추진은 반드시 회사 공정거래 담당 부서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NDEX

Part. I. 하도급법 해설

- 01 하도급법 해설
 - 1.1. 하도급법 개요
 -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체결 관련)
 -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이행 관련)
 -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등 관련)
 -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 1.8. 기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 1.9.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Part. II. 상생협력법 해설

- 02 상생협력법 해설
 - 2.1. 상생협력법 개요
 - 2.2.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
 - 2.3.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 2.4.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안내

Part. III.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01 체크리스트 안내
- 0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03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Part. IV. 공정거래 관련 법규 안내

- 01 하도급법 및 관련 법규
- 02 상생협력법 및 관련 법규

I. 하도급법 해설

1. 하도급법 해설

- 1.1. 하도급법 개요
- 1.2. 계약 체결 관련
- 1.3. 대금 결정 등 관련
- 1.4. 계약 이행 관련
- 1.5.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 1.6. 기술탈취 관련
- 1.7.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 1.8. 기타 불공정 하도급 행위
- 1.9.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1. 하도급법 해설

1.1. 하도급법 개요

1.1.1. 기본 사항

■ 의의

- 하도급법상 하도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

-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판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정의

- 원사업자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을 의미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보복행위 금지 규정 등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

■ 하도급법상 위탁의 유형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1. 하도급법 해설

1.1. 하도급법 개요

1.2. 하도급법과 이해관계자

- 하도급법상 당사 이해관계자는 정부, 주주, 협력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생협력법상 이해관계자 내용도 하도급법과 거의 동일함
- 각 유형별 이해관계자 및 당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하도급법·상생협력법 사항, 당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과 같음

구분	예시	준수 필요 사항	위반 시 피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서면 교부의무 선급·하도급대금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주주	당사 주주	부당 대금결정 금지 부당 감액 금지	• 대외 이미지 하락, 주가 하락 등 따른 금전적 피해
협력사	하도급·위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매입 거래처 (계열사, 대기업 외)	부당 위탁취소·반품 금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검수 의무 부당 경제적이익 요구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경영간섭 금지 경영상 정보 요구 금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법 위반행위 시정 등	• 법규 위반 따른 금전적 피해 • 기술자료 유출 등 따른 사업적·업무적 피해
기타	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법상 CP 등급평가 규정	• 허위·부실 평가에 따른 대외 이미지 하락 • 등급 및 인센티브 취소



1. 하도급법 해설

1.1. 하도급법 개요

■ 하도급법상 위탁의 유형

-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위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 용역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함

2)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 등)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3)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 내용

- 서면발급의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이때 발급의 기준은 양사 기명날인 시점이 됨

- 서면의 기재사항

서면에는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함

또한, 하도급연동제 시행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도 의무적으로 기재 필요

**** 상세 내용 본 편람 1.7. 하도급연동제 관련 내용 참고**

- 서면의 보존 의무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단, 기술자료 관련 거래자료는 7년).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전자 문서도 동일)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 필요)

- 계약 시 주의사항

-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전부 누락된 서면을 발행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발행에 해당
- ✓ 제조에 착수한 후에 계약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서면 지연 교부)
- ✓ 하도급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허위서면발급에 해당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 보존 대상 서면 리스트

연번	보존 대상 서면	비고
1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법 제3조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3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하도급법 제8조
4	• 검사결과 통지서	하도급법 제9조
5	• 감액 서면	하도급법 제11조
6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하도급법 제16조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11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14	•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명세서,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 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2. 부당특약의 금지

■ 내용

- 부당특약

하도급 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협력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
"계약조건"은 "하도급 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부당특약은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 하도급법 제3조의4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2025.04. 개정, 2025.10.02. 시행〉

※ 2025년 4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해, **부당특약의 사법상(계약상) 효력이 무효화(시행일 부터)**

※ 또한, 2025년 5월 1일 부당특약 고시 및 심사지침 개정/시행하여, **하도급대금 일부를 부당하게 보류하고 지급하는 '유보금 관행' 관련 계약조건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한 종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음**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2. 부당특약의 금지

■ 내용

- 부당특약

하도급 계약조건 중 "수급사업자"(협력업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
"계약조건"은 "하도급 계약서"라고 명기된 서면에 기재된 문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서면의 명칭, 형태 불문)

- 부당특약은 이를 실행하지 않아도, 그러한 약정의 체결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 하도급법 제3조의4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2. 부당특약의 금지

- 서면 미기재 사항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계약 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금지
 - ✓ 계약서 외 기타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업무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도不可

★ 기타서류 - 예시

현장설명서, 입찰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유의서, 입찰제안요청서,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계약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환경에 관한 협약서, 하자보수에 관한 협약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조물 책임에 관한 협약서, 각서, 확약서, 합의서 등(명칭불문)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금지.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얻어 관련 보험의 사업주 지위 이전
 - ✓ 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비용이 별도로 지불되어야 함

★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예시

민원처리 비용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 용지보상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민원에 대한 민·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산업재해 관련 비용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법령·거래관행·목적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2. 부당특약의 금지

- 입찰내역과 무관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 ✓ 산출내역서: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수급사업자가 입찰 시 작성, 제출하여 낙찰받은 내역서
 - ✓ 산출내역서 외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 ✓ 업무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
 - ※ 단,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의 견적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
- 하도급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금지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아래의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매출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 * 예) 원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부분의 하자담보 책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 등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25.07.22.)

• 법 위반 사항

- ✓ 부당특약 설정: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
- ✓ 하도급대금 미지급: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위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미지급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 4. 12.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

제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주)서연이화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및 부당특약 설정행위 제재('25.06.30.)

• 범위반 사항

- ✓ 금형 제조 위탁 시 하도급계약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최소 32일 ~ 최대 3,058일)에 발급
- ✓ 하도급계약에 아래와 같은 부당한 특약(수급사업자 권리 제한 계약조건)을 설정

제 7 조 : 검수 및 납품

- 1) "갑"은 필요에 따라 "을"의 기술자 입회 아래 중간검사를 행하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 2)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고 "갑"이 지정하는 검수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하며,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갑"의 승인이 있어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갑"의 합격, 불합격 판정에 대해서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8 조 :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

- 1) 제품 설계를 함에 있어 "갑"이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을"은 그 제품 사용 및 판매가 여하한 특허권 및 기타 공업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을"은 특허권 및 기타공업소유권의 침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비용과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 지체 변상금

- 1)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연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 /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불한다.
- 2) "을"의 납기 지연으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항의 지체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을"은 이유없이 "갑"의 적합한 요구에 따라 이의 전액을 배상한다.
- 3) 다음 사유로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전 1)항 및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문서에 의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때
 - 나) 천재지변, 전쟁, 화재, 폭발, 정부나 공공기관의 조치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때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경남기업(주) 및 태평로 건설(주)의 서면지연 교부, 부당특약 설정 사건('22. 3.10.)

• 법위반 사항

1) 경남기업(주): '하도급법 제3조서면 발급 의무 및 제3조의 4 부당특약 설정 금지'

- 공기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경계약 서면을 해당 변경 공사의 착공 후 11일~ 47일이 지연된 시점에 발급
- 부당하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
예1) “공사 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예2) “을은 내역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등

2) 태평로 건설(주) '하도급법 제3조의 4 부당특약 설정 금지'

- 부당하게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
예1) “원 도급사는 기성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예2) “사고 발생 시민 형사상 책임·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

• (제재) 위 2개사에 재발방지 명령

• 기타

- 본 건조치는 산재 비용 부담전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
☞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 다수 업체·중대재해 다수 발생업체, 공공기관 제보 업체 등 25개사 대상' 21. 5. ~ '21. 9. 동안 공정위 직권 현장조사 실시
- 부당특약 유형 및 건수 등 기준, 상대적으로 위반사항 경미한 17개 업체는 경고조치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주)대명건설의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사건('23. 8.21)

• 법위반 사항

- ✓ **(서면 미발급)** (주)대명건설, 2020. 8. 24. ~ 2022. 3.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AL창호공사'를 위탁하며 관련 추가·변경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 (주)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위탁내용에 없던 3개 세부 공종(본동 환기탑 공사 및 단열 공사, 주유소 단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1개 세부 공종(창상부 보강틀 시공)에 대한 변경공사를 지시하였음

** (주)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위탁내용에 없던 3개 세부 공종(본동 환기탑 공사 및 단열 공사, 주유소 단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지시하였고, 1개 세부 공종(창상부 보강틀 시공)에 대한 변경공사를 지시

- ✓ **(하도급대금 미조정)** (주)대명건설은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021. 10. 29. 및 2022. 1. 10.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15일내에 증액 사유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30일내에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주지도 아니하였음

• **(제재)** (주)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3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제재('24. 1.12.)

- 법위반 사항

- ✓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음
- ✓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 ✓ 발주서 또한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은 기재되어 있었으나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되었음
- ✓ 이러한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해당

- (제재) 3개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천만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주)아이디오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4. 2.20.)

• 법위반 사항

- ✓ (주)아이디오테크는 2021.11.17. 수급사업자에게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수행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견적서에 ‘상기 내용과 같이 발주함. (주)아이디오테크’라는 내용과 회사 인감만을 날인하여 2021.11.17. 수급사업자에게 이메일로 발급한 후, 다른 서면은 발급하지 않는 등 법정 필수 기재사항과 수급사업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였음
- ✓ 또한, (주)아이디오테크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수행을 2022. 1.12. 정상적으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제재 의결 당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천 8백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 (제재) (주)아이디오테크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 지급명령)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허위 단가 기재 발주서 발급행위 제재 사례('24. 2.22.)

• 법위반 사항

- ✓ 쿠팡(주)는 2020. 7. 1.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 신설회사 씨피엘비(주)를 설립
 - ✓ 위 2개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거래에 따른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기재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하였음
 - ✓ 쿠팡(주)/씨피엘비(주)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하였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으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 ✓ 공정위는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로 개별 거래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인데, 발주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들은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는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는 이유로 쿠팡(주)/씨피엘비(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제재) 위 2개사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7,800만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주)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4. 2.28.)

• 범위반 사항

- ✓ 성우하이텍은 2019.6월부터 2022.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상호 간에 기술자료를 교환하였음에도 비밀의 유지의무는 하도급 업체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기술자료 요구서도 발급하지 않았음

기본 계약서	“을”은 “갑”제작으로알게된“갑”에관련된“기술자료”를무단으로사용, 복사하거나“갑”의업종과유사한타 업체에“기술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보안 서약서	1.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기밀유지의무에 관한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2. “을”은거래기간중은물론거래종료후에도 “갑”의거래관계에서“갑”으로부터지득한업무상, 기술상 기밀과정보등을포함한일체의관련내용에대하여“갑”의사전서면승낙이없이이를 제3자또는불특정다수인에게직·간접적으로제공, 누설, 유포하지아니한다.

- (제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4천만원 부과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 사례)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케이씨코트렐(주) 및 (주)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제재 (2024.04.02.)

• 법위반 사항

- ✓ 위 2개사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계약 시 교부한 구매사양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당특약을 설정하였음

[구매사양서 특약조건]

- ① 공급자는 발주자의 본 구매사양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설치 및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하여야 하며,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한 돌관작업은 '시공사'에 의해 수행하고 그로 인한 비용은 '시공사'의 부담으로 한다.

- ✓ 공정위는 위 특약조건이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 시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 관련 수급사업자에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으로서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

• (제재) 위 2개사에 시정명령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3.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사례

(주)금강주택의 부당특약 설정행위 제재 ('24.07.03.)

- (행위 내용) (주)금강주택은 2020. 4. 20. 수급사업자에게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사항서 등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총 17개의 부당특약을 설정

①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특기사항서	천공 및 주입 등 일체의 행위를 위한 분진, 차음, 방음시설 등의 공사로 인한 제반 민원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
	토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
	토공사로 인한 주변건물 민원 및 지반침하 등의 문제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안전진단 및 공사수행하고 민원 처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D/T로 인한 인접건물 및 제3자의 피해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발파공사로 인한 인접건물 및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②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현장설명서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대관 인허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변경에 소요되는 모든 대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③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특기사항서	계약 후 물가변동 연동제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
④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약정	
현장설명서	계약 불이행 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
현장설명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우선으로 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⑤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현장설명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견적서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동절기 공사비용 청구를 금지하는 규정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사고, 산업재해 등의 처리 비용을 원사업자가 대신 선지급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기성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기성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의제기나 지연이자 청구 금지하는 규정
	기성금 확정을 실적량 기준 95%로 하고 나머지 5%는 정산 및 하자이행증권 청구 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수급사업자가 지정된 위치에 폐기물을 적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성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원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담당감독자(현장담당원)의 구두지시에 의한 증/감분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규정
특기사항서	수급사업자의 귀책 여부, 책임 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차수구간의 토류판 벽체 누수 현상으로 인한 보수·보강 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
	시공방법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이 감소할 경우 임의로 감액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현장 여건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실시공 수량 정산 이외에 할증 청구를 제한하는 규정

- 제재: (주)금강주택에 재발방지 시정명령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FAQ

Q1

-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경우, 당사의 도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우선 발급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된 정식 계약 서면은 추후 발급하여도 무관한지?

A1

- ✓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하는 계약 등 서면의 경우, 양 당사자 기명날인이 완료된 완전한 서면이어야 함
- ✓ 일방 당사자의 인장만이 날인된 발주서를 발급하여 업체에 업무 지시할 경우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교부의무 위반이 되므로 유의
- ✓ 한편, 그러한 "완전한 서면"은 반드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업무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급 완료되어야 함

Q2

- 어떠한 계약 조건들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 될 수 있는지?

A2

-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수급사업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말함
- ✓ 이러한 부당특약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하도급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첨부 문서 등 포함)
- ✓ 부당특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당한 계약조건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 계약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 증액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 일체 요구불가
 - ☞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액 이외 공사비 증액 요구는 불가하고,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할 수 없음
 -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계약 내용 변경 관련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 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전체 시공에 필요한 업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 계약금액 5% 미만의 경미한 추가 비용 발생 시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1. 하도급법 해설

1.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체결 관련)

1.2.4.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FAQ

Q3

- 발주서 등의 계약문서에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진실한 계약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는지?

A3

- ✓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호간에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행되었다 하여도 하도급 계약문서 일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임
- ✓ 공정위는 실제 계약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계약서면의 내용이 일부 허위로 기재된 경우 이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로 보고 있음
- ✓ 실제로, 2024년 4월 쿠팡(주)는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음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내용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
- ✓ 부당한 방법 여부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예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제시하는 등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또는 차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후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2. 부당 감액 금지

▪ 내용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음
- ✓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는 지연 이자(15.5%)를 지급하여야 함

부당 감액 행위 예시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고객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2. 부당 감액 금지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구매강제 행위 예시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제공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제적 이익'에는 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예시

- 원사업자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 거래 개시, 다량 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장려·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내용

- 의의 및 판단기준

-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 가능
- ✓ 하도급대금의 감액 또는 증액 시에는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필요
- ✓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구체적인 조정 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받은 경우, 하도급계약이 발주자 조정 이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 조정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첫번째 항에 따라 적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
- 물가변동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데 있어 물가변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의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필요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4. 공급원가 등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의무

■ 내용

- 조정협의 신청
 -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 신청 가능
- 조합의 협의개시 요건
 - ✓ 아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급사업자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위와 같은 협의 가능
 -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이상인 경우
- 조정협의의무의 발생요건 및 의미
 - ✓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인건비 상승, 저가수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이유로는 인정 불가
 - ✓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하도급법위반이 아니지만, 원사업자가 그 조정신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정상적인 조정이 아닌 경우

- 조정협의 신청에 응하지 않거나, 개시 이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의 실질적인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 권한 또는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진 담당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인 근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신청내용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 정당 사유 없이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일정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경우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의 부당감액 행위 제재('25. 9.28.)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 (주)인팩은 2019. 4.23.부터 2020. 4.13.까지 수급사업자에 금형 11벌의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금형비의 감액조건 및 사유 등에 대한 어떠한 사전 명시 및 협의가 없었음에도 수급사업자와 가격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40,690천원을 감하여 지급
- ✓ 인팩이피엠(주)는 (주)인팩이 2019. 6. 4.부터 2019.10.14.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금형 11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023. 1.13.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주)인팩 사례를 답습하여 금형비 감액조건 및 사유 등에 대한 어떠한 사전 명시 및 협의가 없었음에도 (주)인팩이 작성한 가격합의서대로 대금을 감액 지급하거나, 자신이 새로이 수급사업자와 가격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20,884천 원을 감하여 지급

(제재) (주)인팩 및 인팩이피엠(주)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태양금속공업(주)의 부당 감액 및 단가 인하, 어음할인료 등 미지급 사건('21. 9.23.)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부당감액 금지', 제4조 제2항 '부당한 대금 결정', 제13조 제6항 및 제7항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

- ✓ 태양금속공업(주)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약 980만원을 감액하고, 수급사업자들의 납품 단가를 정당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

** 종전 단가 대비 인하액 총 1.77억원

- ✓ 또한,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수수료 약 500만원을 미지급

(제재) 태양금속공업(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3억원 부과, 법인 검찰 고발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현대산업개발(주)(이하 “HDC”)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사건(’21.12.30.)

• 법위반 사항

1) 하도급법 제3조 ‘사전 서면 교부 의무’

- 공사 등 건설·제조 위탁 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 착공 또는 납품개시 한 후 최소 3일 ~ 최대 413일 지연 발급

2) 하도급법 제 13조 제 8항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미지급

3) 하도급법 제 16조 제2항, 제3항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미통지
- 발주처 증액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와 변경계약 체결

(제재) HDC에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신태양건설(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사건('21. 6.30.)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2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 신태양건설(주)는 자신이 지분 49.5%를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를 돕기 위해 관련 하도급업체에 위 시행사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약17.3억원)를 분양 받을 것을 요구.
- ✓ 이에 하도급 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건설(주)와의 하도급계약 (계약금액 74.5억원) 체결 및 유지를 위해 위 7개 상가를 분양 받음.

(제재) 신태양건설(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

지안건설(주)의 부당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제공 요구 등 사건('21. 9.23.)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특약 금지' 및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 ✓ 지안건설(주)는 협력업체에 공사 위탁 시 다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였음
 - 1)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계약서와 별개로 공사약정서에 아래의 계약조건 설정
 - ① 공사 중 발생 민원, 발주처 업무 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②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③ 인·허가 등 대관 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약정
 - 2)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로부터 1.2억원 제공 요구 후 수령

(제재) 지안건설(주)에 재발방지 명령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수급사업자로부터 부당이익 수취한 (주)지에스리테일 제재 사례('22. 8. 3.)

- **범위반 사항: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68억여 원, 판촉비 126억여 원, 정보제공료 27억여 원을 수취하였음.

❖ **(성과장려금 수취 행위)**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 장려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지에스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음**에도 계약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급업자로부터 수취함.

❖ **(판촉비 수취 행위)** 지에스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는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고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음.

❖ **(정보제공료 수취 행위)** 수급사업자들은 지에스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하여 납품하므로 **지에스리테일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였음. 정

* 정보제공료는 지에스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뀌 위반행위를 지속함.

- **제재: (주)지에스리테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여 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주)뉴프렉스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행위 제재('23. 8.23.)

- **범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부당감액]**

- ✓ (주) 뉴프렉스는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연성회로기판 제조를 위탁하면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총 328,85,080원을 감액하여 지급

- ** (주)뉴프렉스는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수급사업자별 매출인하 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

- ** (주) 뉴프렉스는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였으며, 수급사업자들이 통보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

- **제재: (주)뉴프렉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0.96억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동원로엑스(주)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4. 3.27.)

• 법위반 사항

- ✓ 동원로엑스(주)는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 ✓ 이 과정에서, 동원로엑스(주)는 재입찰 시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4개 업체 중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3개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1차 입찰에서는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종 제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 ✓ 또한, 동원로엑스(주)는 재입찰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을 통해 1차 입찰 시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았음
- ✓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동원로엑스(주)가 입찰참가업체에 재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없었으며,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함

-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 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행위 제재 ('24.09.12.)

- (행위 내용)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는 2021. 1. 31.부터 2023. 4. 7.까지 동안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웬스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
 - ①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 미통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4회에 걸쳐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함
 - ②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증액계약 지연체결)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증액
 - ③ (증액된 추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미지급)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1천 8백만원을 미지급
- (제재)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 5백만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5. 대금 결정 등 관련 사례

(주)유라테크의 하도급대금 소급 감액행위 제재 ('24.10.16.)

- (행위 내용) (주)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의 절단, 압착,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한 후, 기존에 단가를 정하여 거래하던 17개 품목(2020. 4. 8. 1개, 2020. 9. 25. 1개)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뒤, 위 임시단가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총 7천5백만원을 부당 감액하였음
- (제재) (주)유라테크에 부당감액된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6천 7백만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6. 대금 결정 등 FAQ

Q1

- 하도급계약 시점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A1

- ✓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 의무 유무 여부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위탁)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 받은 조정기준일 이전 체결된 하도급 계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의무는 없음
- ✓ 단, 계약 지연 등으로 정식 계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체결되었으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Q2

- 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관련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A2

- ✓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하도급법 규정과 당사자간 약정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그 약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도급법이 적용됨
- ✓ 하도급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정의 내용과 무관하게 원사업자는 물가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
- ✓ 한편, 본건 질의와 같이 하도급 계약에 물가변동 적용은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침해(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권을 배제하는 약정)하는 부당특약으로 인정 소지 있으므로 유의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6. 대금 결정 등 FAQ

Q3

-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한 후 수급사업자의 투찰 금액은 변동 없이 세부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지?

A3

- ✓ 투찰금액 변동이 없었다 하여도 합의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세부 단가를 일률적으로 변경·결정하는 행위는 추후 세부 공종 단가별로 발주자의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선급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금액 반영 등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불이익 발생 우려 존재
- ✓ 따라서, 본건 질의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Q4

- 하도급대금 지급시 특정한 품목의 단가 단위를 절삭(10만원 이하 단위 절삭 등)하여 하도급금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 감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A4

-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감액금지에 위반되는 부당감액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시 사전에 명시된 감액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단가의 10만원 이하 금액을 절삭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한 감액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



1. 하도급법 해설

1.3. 원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금 결정 등 관련)

1.3.6. 대금 결정 등 FAQ

Q5

- 수급사업자와 견적서를 주고 받으면서 협의 한 뒤, 최저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위법인지?

A5

- ✓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견적보다 낮게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으로 보고 있음
- ✓ 질문과 같은 사례에서, 공정위는 견적서를 주고 받으며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되었다고 하여도 하도급대금 최종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없고, 원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

Q6

- 수급사업자와 납품 물품의 단가 인하를 합의한 경우, 이를 합의 이전의 계약 내용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A6

- ✓ 정당한 사유(예: 기존 단가를 바로잡아야 할 명백한 오류 발견 등)가 있는 경우 외에, 단가 인하의 소급 적용은 불가
- ✓ 유사 사례에서,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소급적용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소급 적용(부당감액)으로 판단하였음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내용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

- 부당한 위탁취소 위법성 판단

- ✓ 부당 위탁취소 여부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 수급사업자에게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자격·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의 착수·착공을 거부하여 납품 등의 시기(이하 "납기"라 한다)에 완성·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공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의미
- ✓ "임의로" 위탁취소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가 해당 하도급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 위 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실질적 협의 여부는 위탁취소 사유 등이 정상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협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 ✓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 완공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목적물 수령증명서 발급 의무
 -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난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1.4.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 내용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목적물의 제조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의 사정으로 해당 기간이나 계절을 넘겨 납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의 품질·성능 등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생산과정 또는 납품 등을 위한 운송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목적물 등이 오손·훼손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예시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 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고객 클레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률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의 이유로 이미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3. 부당반품의 금지

▪ 내용

- 의의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

- 위법성 판단기준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을 반품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 위탁계약 체결 및 반품의 경위, 반품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이행 내용과 위탁할 때의 반품조건, 검사방법, 반품에 따른 손실의 부담, 목적물 등의 수령부터 반품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이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과 다르거나 목적물 등에 하자 등이 있고 이로 인해 계약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

부당반품의 예시

-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발주중단,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사양변경·모델단종·판매부진·재고증가·보관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4. 목적물의 검사

▪ 내용

- 목적물 검사 의무
 - ✓ 위탁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함
 - ✓ 검사 방법에는 전수검사, 발췌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 합격 등이 존재
- 검사결과 통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기간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 따라서 원사업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품을 반품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없음
 - ✓ 검사결과 통지 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가능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5. 계약 이행 관련 사례

(주)신성이엔지 및 (주)시너스텍의 부당반품 등 사건('22. 3.23.)

- 법위반 사항

1) 서면 미발급(하도급법 제3조 위반)

- (주)신성이엔지와 (주)시너스텍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 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

2) 부당한 반품 행위 (하도급법 제10조 위반)

-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수급 사업자에게 반품하였음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 미지급

- 제재 : 위 2개사에 시정명령, 시너스텍(주)에 과징금 2,000만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5. 계약 이행 관련 사례

명가토건(주)의 부당한 위탁취소 사건('21. 9. 6.)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명가토건(주)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업무를 위탁한 후,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는 문서를 발송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존 하도급 공사 중 일부 공사 업무를 해지

** 명가토건(주)는 해당 계약 해지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

(제재) 명가토건(주)에 재발방지 명령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5. 계약 이행 관련 사례

(주)피앤씨랩스의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사건('22. 2.28.)

- 법위반 사항

1) 하도급법 제3조 '사전 서면 교부 의무'

- (주)피앤씨랩스는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 시기 등 하도급법상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

2)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 납품 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되었으나 수급사업자의 피해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건과는 별개 위탁 건인 마스크 팩 원단의 수령을 거부

- (제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6. 계약 이행 관련 FAQ

Q1

- 현재 하도급계약 이행 중인 수급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소속 직원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해당 수급사업자 담당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임. 이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 위탁취소에 해당하는지?

A1

- ✓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음
- ✓ 본건의 경우, 업체 재정문제로 향후 계약 이행 가능성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하여, 해당 하도급계약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 하도급업체와 계약 해지 시는 반드시 1) 하도급 계약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2) 동 계약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해지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
- ** 해당 계약상 해지 사유, 절차 등이 정당한 내용인지(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 필요

Q2

-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검사까지 완료하였으나 현재 당사에 해당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여 수급사업자에 양해를 구한 다음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 보낸 뒤 이를 잠시만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음. 이 경우 부당반품에 해당하는지?

A2

- ✓ 하도급법상 부당반품행위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과는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행위를 총칭함
- ✓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부당반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와 별도 물품보관 계약 등을 체결하여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 있음



1. 하도급법 해설

1.4.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계약 이행 관련)

1.4.6. 계약 이행 관련 FAQ

Q3

- 수급사업자 소속 작업자의 기량이 부족하고 작업이 지연되었다면 위탁취소 가능한지?

A3

- ✓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 까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한 위탁취소로 보고 있음
- ✓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공정 등이 일부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거나 전체적인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다면 원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불가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1. 선급금의 지급

■ 내용

- 선급금 지급 의무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 대상품목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 하여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상기 방식과 같이 하도급 율을 감안한 선급금을 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됨
-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금융기관과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율)를 지급하여야 함

선급금 지급 의무 위반 유형 예시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선급금을 조기 공제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40% 수령하였으나 하도급업체에는 25%만 지급한 경우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2. 하도급대금의 지급

■ 기본 원칙

-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 단,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시기 중 더 빠른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연이자 등의 지급
 - ✓ 선급금, 하도급대금을 위 지급시기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필요
 - ✓ 이자율은 공정위 고시 비율에 따름('22. 4. 기준 연 15.5%)
- 현금지급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불가
 - ✓ 이 경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의 현금비율보다 같거나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여야 함
- 중견기업에의 적용
 - ✓ 하도급대금 지급 조항은 중견기업과 원사업자간 거래에도 적용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내용

-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불가
-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의미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원사업자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이 합의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로 보기 어려움

- 대물변제시 서면 교부 절차

- ✓ 원사업자는 변제 전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 확인 가능한 자료 수급사업자에 제공
- ✓ 변제 시 지체 없이 원사업자 자료 제시일, 자료 주요 목차,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받은 사실, 양 당사자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교부

1.5.4.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및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내용

-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
- ✓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필요
-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 수출물품을 제조위탁한 경우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필요
- ✓ 내국신용장 개설 시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인수증) 교부 필요
-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전/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 발급하여야 함
 1. 원사업자가 개설 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내용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위 사유들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필요
 - ☞ 이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예외
 - ✓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등
 -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기타 사항
 - ✓ 본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차감하여 지급
 -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필요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6.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사례

(주)새롬어패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건('21. 9. 9.)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 (주)새롬어패럴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양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서면 미발급)
- ✓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의류를 판매하던 중, 의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5.82억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음(대금 미지급).

**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하자 통지 없었고, 상당수 제품은 이미 판매하였음

(제재) (주)새롬어패럴에 재발방지 명령 및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동우콘트롤(주)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사건('21. 6.30.)

• 법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 ✓ 동우콘트롤(주)는 협력업체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자신이 지급한 사급자재를 협력업체가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품받은 목적물 대금 일부인 0.8억원을 미지급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총 0.1억원도 미지급함.

(제재) 동우콘트롤(주)에 재발방지 명령 및 미지급 지연이자 0.1억원에 대한 지급명령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7.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FAQ

Q1

-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선급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A1

-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율적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을 것을 포기하여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 참작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 이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미지급이 수급사업자 귀책사유라는 점 입증 필요
- ✓ 한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 강요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예시하여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요행위는 절대 금지됨

Q2

- 수급사업자가 본인의 건설현장 노동자에 노무비를 미지급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서 해당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

A2

- ✓ 하도급법은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와 직접 지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건설 노동자와 원사업자의 관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 관계가 아니므로 이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의무 미발생 (노동자는 수급사업자가 아님)
- ✓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 합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건설현장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 필요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7.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FAQ

Q3

-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서를 미제출하여 계약에 따라 하자 보증금 및 하자 보수용 자재 대금 해당 금액을 수급사업자 보증서 제출 시까지 유보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지?

A3

- ✓ 하도급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 귀책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 등을 적용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은 목적물 납품 및 인도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서 그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계약 등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한 하자 보증서 등이 미제출 되어 그 범위 내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는 상기 참작사유 해당 가능

Q4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A4

- ✓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의 지급의무는 하도급법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면제할 수 없음
- ✓ 따라서, 수급사업자와 합의로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1. 하도급법 해설

1.5.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1.5.7.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FAQ

Q5

- 도급 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A5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Q6

-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A6

- ✓ 원사업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지급받은 어음이 그 만기일 이전에 부도처리 되었다면, 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해당(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1. 기술자료의 의의

▪ 내용

- 기술자료의 정의

판단	① 비밀관리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의	협력업체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1.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 중 협력업체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기타 정보·자료 중 협력업체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시	작업공정도, 공정 설명서, 작업표준서(지시서), 설계도, 회로도, 공정 또는 설비 배치도, 장비 제원, 시방서, 기계운용매뉴얼, 시공 프로세스 매뉴얼,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실패한 연구보고서 포함), 소프트웨어 테스트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등	

- 기술자료 관련 법적 요구사항

- ✓ 원칙적 금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를 유출/유용 행위
- ✓ 기술자료 요구 허용: 아래 ① + ② + ③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술자료 요구 가능
 - 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최소한의 범위 내 ③ 사전협의 및 서면(법정사항 기재) 발급
- ✓ 기술자료 수령 전 자료 제공 업체(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법정 기재사항 반영된 비밀유지 계약 체결 필요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2.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등 금지

▪ 내용

- 개요

- ✓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원칙적으로 위법
- ✓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 ✓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요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

정당한 사유 여부 예시

- 공동 특허 개발 과정에서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공동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 범위 내에서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제품 하자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 ➡ 가능
-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제공된 기술자료의 전체 완본을 요구 ➡ 위법

-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아래 법정 기재사항이 반영된 비밀유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와 체결 하여야 함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위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 · 폐기 방법 및 일자

※ '23.01.12.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시행으로 기술유통 행위 과징금 한도 상향
: 10억원 → 20억원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2.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등 금지

■ 기술자료의 요구 방법

- 기술자료 요구 서면의 발급

✓ 시기 : 기술자료 요구시 발급

✓ 내용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등 하도급법이 명시한 법정 기재사항 모두 기재 필요

※ 법정 기재사항

1. 기술자료 요구목적

2.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3. 기술자료의 대가/대가의 지급방법

4.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5.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6.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발급: 양 당사자 서명 - 계약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 서명 필요. 일방당사자의 날인만 있는 서면은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음

■ 기술자료의 유용/유출

-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유출 불가

✓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에 기재한 요구목적, 합의된 사용범위 등을 벗어나서”

✓ “유용/유출”: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유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유출)

☞ 유용 예)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최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

☞ 유출 예) 계약 이행을 위해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입찰설명회 자료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경쟁자에 무단으로 전달하는 행위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3. 기술자료 유사 개념: 경영상 정보의 제공 요구 금지

■ 내용

-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 불가
 - ✓ 정당한 사유: 위탁 목적 달성 위해 경영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
 - ※ 단, 이 경우에도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보 요구 가능
 - 예1) 원사업자가 법령 상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예2)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참여 시 상호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예3) 원/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중 필요한 세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예4) 미양산 또는 시장가격 미형성 품목의 하도급계약 관련 정산 등 계약의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 위반 시 “부당 경영간섭 행위”로 처벌
 - ✓ 단, 정보 요구 시 별도의 요구 서면 발급은 불필요
- 경영상 정보의 종류 및 예시

경영상 정보의 종류	예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 관련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생산계획, 판매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	거래처명부, 타 사업자에 납품하는 납품조건 (납품가격 포함) 등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 시 사용하는 전산망의 고유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 접속을 위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타 사업자와 거래하는 구매시스템 의 명칭, 접속 비밀번호 등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주)카팩발레오의 기술유용행위 제재('25.1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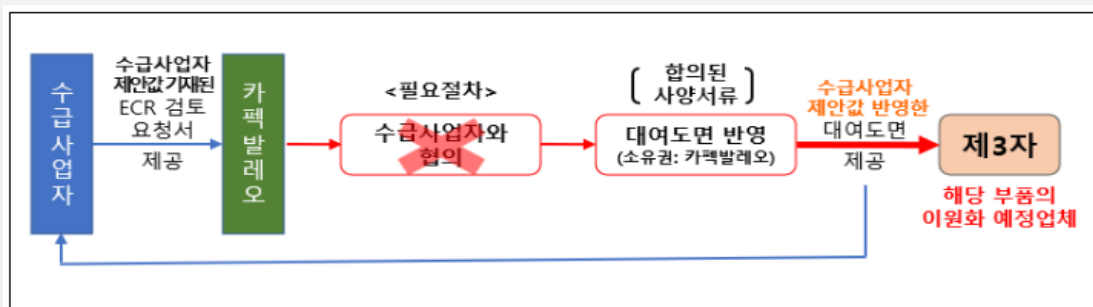
▪ 사건개요

- ✓ 카팩발레오는 수급사업자에 도면을 대여해주고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하도급거래를 해오다 2019년경 대여 도면의 치수 일부를 수정하고 초도품 공급을 요청
- ✓ 수급사업자는 카팩발레오의 치수 변경이 다른 부위의 불량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불량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치수(‘수급사업자 제안값’)를 개발하여, 기술사양변경의뢰 (Engineering Change Request, 이하 “ECR”)검토요청서를 카팩발레오에 제공
- ✓ 이 자료는 부품의 특정 부위의 공차, 형상 등 치수 정보, 변경 요청 치수 및 변경 사유 등이 기재된 부품의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이를 통해 해당 부품의 불량을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임

▪ 법 위반 행위

- 1) (기술자료 유용행위) 카팩발레오는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ECR 검토요청서상 수급사업자의 제안 값을 자신의 도면에 사용하고, 그 도면을 제3자에게 제공
- 2)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카팩발레오는 '17.4.3.부터 '21.10.22.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양산 부품 품질승인 목적으로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이 사건 기술유용행위 설명도〉



제재: 카팩발레오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다른 사업자에게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한 (주)현대케피코 제재('25.07.23.)

▪ 법 위반 행위

- 1) (기술자료 제3자제공행위)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현지 공급업체에게 해당 부품 개발 참고 목적으로 기술자료 5건을 제공
- 2)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현대케피코는 2018. 5. 24.부터 2021. 7. 23.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
- 3)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현대케피코는 2017. 10. 25.부터 2022. 11. 29.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4)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현대케피코는 2022. 2. 23.부터 2023. 7. 6.까지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 5) (부당 특약) 현대케피코는 2019. 9. 17.부터 2022. 11. 28.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음

제재: 현대케피코에게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4.74억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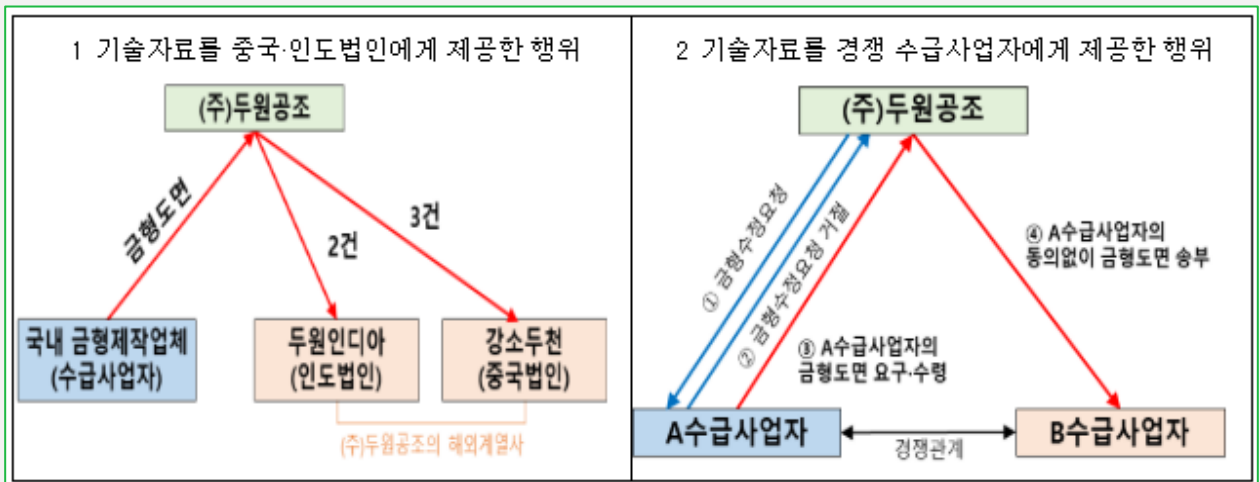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주)두원공조 기술자료 유용행위 제재('25.06.05.)

▪ 법 위반 행위

- 1)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작 전 승인목적으로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2)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또한, 금형도면을 제공받으면서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도 미체결
- 3) (기술자료 유용행위) 해외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금형의 수리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별도 합의 없이 금형도면 5건을 자신의 해외 계열사에 제공

〈이사건 기술유용행위 설명도〉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피에이치에이(舊 평화정공)(주)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사례('22. 8.26.)

- **법위반 사항: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위반[하도급법 제12조의3]**

- 피에이치에이(주)는 '19 ~ '20년 A 협력사의 기술자료 (도면)를 4차례 유용하고 22건의 도면을 정당 사유 없이 요구하였으며, 동 업체 포함 5개 업체에게 요구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음

- **(기술자료 유용)** 피에이치에이(주)는 회생절차 중인 A 협력사의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제안했으나,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A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 개발을 제3의 업체인 C 협력사와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A 협력사 자산은 인수하지 않음
 - ✓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 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토록 하여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
 - ✓ A 협력사 도면의 자사 도면화 작업(A 협력사 로고, 수정이력 삭제 등)에 착수하여 이를 완료 후 본인 소유 도면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
 - ✓ B 업체 제작 도면과 본인이 보유한 A 협력사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C 협력사에 A 협력사 도면 23건을 제공
 - ✓ 본인 소유 도면으로 등록한 41건 도면 중 39건을 C 협력사에 제공하여 C 협력사로 하여금 이에 근거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을 납품토록 함
 - * 일부 단종 품목 외 나머지 품목은 현재까지 납품 되고 있는 중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A 협력사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을 통해 필요도면으로 파악한 도면 59건 중 미보유 도면을 A 협력사에 요구하여 22건을 수령
- **(서면 미교부)** A 협력사를 포함한 협력업체들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C사에 제조위탁 서면을 지연 발급함

- **제재**

행위	조치
기술자료 유용	◇시정명령 [재발방지, 기술자료 반환/ 폐기 및 이행결과 서면보고 명령, 통지명령] ◇과징금(7억 8천만 원), 법인 고발
기술자료 요구	◇과징금(2억 5천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과징금(5천 8백만 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
서면미발급행위	◇경고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엘지전자(주)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 사건('22. 3. 7.)

- **법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 3 제2항 '기술자료 요구 요구서면 발급'**

- ✓ 엘지전자(주)는 협력업체에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 받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으면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미발급하였음

**** 요구기술자료: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품질 관련 자료**

- 승인도: 제품 공급 전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
- 승인원: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제조·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 발주 제품에 대해 사전약정된 검사 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및 제품의 설계도면이 발주자가 사전 공지한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내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발송하는 자료

- **(제재) 엘지전자(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0.44억원 부과**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엘에스엠트론(주)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 사건('22. 3. 3.)

- 법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등 금지'

1)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 엘에스엠트론(주)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공 받은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본인 단독명의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함.

2)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 엘에스엠트론(주)은 금형 설계도면을 2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제공 받았으며, 요구 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음.

3)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 또한, 공동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 노트를 요구 하면서, 법정 요구 서면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음.

* 기술자료 요구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정 요구서면은 교부 되어야 함.

- **(제재) 엘에스엠트론(주)에 시정명령 및 쿠퍼스탠다드(주)에 과징금 13.86억원 부과**

* 엘에스엠트론(주)로부터 물적 분할된 쿠퍼스탠다드(주)가 분할 전 회사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례임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두산인프라코어(주)의 기술자료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사건('18. 7.18.)

• 법 위반 사항: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유용 등 금지’

- | | |
|----------------------------|---|
| (1) 382건 승인도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서면 미발급 - 3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승인도 382건을 수령하면서 법정사항 기재 서면 미발급 ✉ 이메일, 전화로 요구 |
| (2) A社の 에어컴프레셔 도면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부당요구 - <u>정당한 사유 없이</u> 협력업체 수급사업자 A社에 에어탱크 단품 도면 제공을 요구 |
| (3) B社, C社の 기술자료 도면·승인도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유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top: 5px;"> <p>① 소형 에어컴프레셔 도면 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 B社の 소형 에어컴프레셔 제품 도면을 甲社에 전달 ✓ 甲社は 전달받은 도면 활용하여 해당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완성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5px; margin-top: 5px;"> <p>② 중형 에어컴프레셔 승인도 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 C社の 중형 에어컴프레셔 제품 승인도 甲社에 전달 ✓ 甲社は 승인도 활용하여 해당 제품 개발 </div> |
| (4) K社の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료 유출 - 수급사업자 K社の 냉각수 저장탱크 승인도를 입찰자료에 포함하여 입찰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5개 경쟁사에 전달하고 공급 가능 여부 확인 |

- (제재) 두산인프라코어(주)에 시정명령, 과징금(3.82억), 법인 및 임직원 5명 고발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현대오토에버(주)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23.06.01.)

▪ 공정위, 시스템개발분야 기술자료요구행위 최초 제재

- ✓ 현대오토에버(주)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 명령 및 과징금(2천만원)을 부과

▪ 주요 내용

- ✓ 현대오토에버,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 사에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 그러나,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 또한,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는 계약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았음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4. 기술탈취 행위 사례

타이코에이엠피(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4.09.27.)

- (행위 내용) 타이코에이엠피(주)는 2017.7.4.부터 2020.2.13. 기간 동안 A협력사로 하여금 협력사 기술자료를 자신이 정한 세부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83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고 제공받았음

타이코에이엠피(주)는 2019.5.2.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는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들이 개발한 기술자료는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일부발취)	각 개별계약 적용 약관(영문 및 번역본)
13. 지적재산권 및 조건부 제3자예탁제도 A. <생략> B. 이 계약서에 근거한 판매자의 의무 이행 결과 판매자가 개발한 모든 기술 또는 바이어의 기술로부터 파생한 기술(중칭하여 '저작물')은 바이어의 기술로 간주하며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단독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략)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영업 기밀 및 특허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바이어가 배타적으로 독점 소유합니다. 판매자는 바이어에게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해야 하며 판매자의 이러한 공개에 저작물에 관한 합리적인 세부 서면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중략) 바이어는 이와 같은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판매자에 대한 추가대금 지불 없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략) 판매자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바이어의 출원 준비 및 실사를 도와야 하며 바이어가 특허를 출원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 바이어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3. Invention or Improvement Any invention, improvement, and/or copyrightable works resulting from or arising out of performance by Seller or Seller's employees or agents under this Order, which performance has been funded by Purchaser, shall be the sole property of Purchaser and considered "works made for hire." To the extent any of the above may not constitute "works made for hire" under any local laws or for any other reasons, Seller hereby expressly assigns and agrees to assign its entire right and interest to such invention, improvement, and/or copyrightable works to Purchaser. Seller shall notify Purchaser promptly of any such invention, improvement, and/or copyrightable works within thirty (30) days of its conception, discovery or existence. 13. 발명 및 개선 본 주문에 의거하여 판매자, 판매자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하거나 구매자가 자금을 지원한 모든 발명, 개선 및 저작물은 '고용저작물'로 간주되며 구매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갖는다. 현지 법률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고용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그 발명, 개선 및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매자에게 즉시 양도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그 발명, 개선 및 저작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재): 타이코에이엠피(주)에게 시정명령(중지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 및 과징금 2.5억원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5. 기술탈취 FAQ

Q1

- 물품의 제작 도면은 기술자료 인지?

A1

- ✓ 도면의 기술자료 여부는 자료의 명칭·형태·종류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며, 하도급법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① 비밀로 유지된 ② 제조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Q2

-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기술자료의 유용, 유출 해당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2

- ✓ 업체 입찰제안서의 기술자료를 직접 유용하거나 계열사 등 제3자에 유출한 경우 [유출]
- ✓ 수령한 기술자료를 납품가격 경쟁 유도를 위해 업체의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 [유출]
- ✓ 사전에 정한 기술자료 반환·폐기 기한을 위반하여 반환·폐기 없이 해당 자료 사용하는 경우 [유용]
- ✓ 납품단가 인하 또는 업체 변경 위해 기존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 ✓ 거래 종료 후 기존에 제공받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유용]



1. 하도급법 해설

1.6.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술탈취 금지)

1.6.5. 기술탈취 FAQ

Q3

- 기술자료 요구서는 모든 업체에 다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A3

-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일 경우에만 적용
- ✓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자료 요구서면 발급 없이 기술자료를 요청해도 무방

Q4

- 생산, 영업활동등에 충분히 이용될 정도로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도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A4

- ✓ 생산이나 영업활동에 이용될 정도로 충분히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료라 하여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건(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보유)을 갖추었다면 이는 기술자료로 보아야 함
- ✓ ** 성공한 실험 데이터 뿐 아니라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도 기술자료에 해당함



1. 하도급법 해설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1.7.1.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시행: '23.10. 4.) 일반

■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

- ① 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 하도급거래에 적용

구분	내용
원재료	✓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 ✓ 가공이나 용역이 투입됨으로써 최종재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의미 ✓ 생산 과정에 사용되어도 물리적·화학적으로 최종 물품 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 원재료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주요 원재료	✓ 하도급법 제2조제16항에 따라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주요 원재료 예시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 수탁기업이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타이어, 전기센서·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발전기·변압기, 모듈·반제품 등



1. 하도급법 해설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1.7.2.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 약정서 등 서면 작성의무

- 원사업자(위탁기업)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하도급거래(수탁·위탁거래)에 연동사항을 서면(약정서) 등에 기재할 의무를 부담
-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 등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①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
- ② 주요 원재료
- ③ 조정요건
-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⑤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산식
-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⑦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제외 사유

-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③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약정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1. 하도급법 해설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1.7.3.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Q1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는 모두 연동 대상인지?

A1

- ✓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대상
- ✓ 다만, 하도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음
 -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③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약정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Q2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연동이 가능한지?

A2

- ✓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 사항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이 아닌 변동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이 연동될 수 있음
- ✓ 다만, 원재료 가격 상승 시에만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나, 하락 시에만 연동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동제의 취지에 반하므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음



1. 하도급법 해설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1.7.3.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Q3

- 원재료 범위에 기성품도 포함되는지?

A3

- ✓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를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함
- ✓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
- ✓ 제조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기성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성품은 연동제 대상인 원재료에 해당
- ✓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공사를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구매하는 기성품인 페인트도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음

Q4

- 소프트웨어가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만약 원재료 해당 시 라이선스 비용 또는 서비스 이용료가 연동 대상인지?

A4

- ✓ 소프트웨어가 목적물에 설치되어 계약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물품 등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성격이 유형의 원재료를 구매하여 탑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재료로 볼 수 있음
- ✓ 소프트웨어는 다른 유형물과 달리 그 사용권, 즉 라이선스 부여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가 재료비가 될 것임
- ✓ 다만, 소프트웨어가 제조등 위탁 과정 중에는 사용되지만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경비에 해당함



1. 하도급법 해설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1.7.3.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Q5

- 인건비, 운반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지?

A5

- ✓ 인건비는 재료비가 아닌 노무비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지 않음
- ✓ 운반비, 운송업체 유류비는 경비의 일종으로 원재료의 비용이라 할 수 없음

Q6

-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 유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6

- ✓ 원사업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 필요 최소한의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영상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음
- ✓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주요 원재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면, 수급사업자와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후 그 취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



1. 하도급법 해설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1.7.3.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Q7

-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A7

- ✓ (서면 미발급)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 가능
- ✓ (탈법행위) 연동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도급법상 벌점도 부과 가능
→ 구체적으로, 1차 위반의 경우 3천만원, 2차 위반의 경우 4천만원, 3차 위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 벌점의 경우, 미연동 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는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이 부과

** 탈법행위 예시

수년 동안 1년 단위 자동 갱신 방식으로 수억원의 하도급계약을 유지해 오다가 연동 약정 체결 의무 회피를 위해 거래기간을 90일 이하(단기계약) 또는 하도급대금을 1억 원 이하(소액계약)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른바 쪼개기)



1. 하도급법 해설

1.7. 원사업자의 의무사항(하도급대금 연동 의무)

1.7.3.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Q8

- 하도급대금 연동의무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병행되는 경우 원재료 가격과 물가가 모두 상승한다면 하도급대금을 어느 금액만큼 증액하여야 하는지?

A8

- ✓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 요인이 연동제와 별개인 경우에는 제도별로 별개의 대금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하도급 연동의무와 별개로 대금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반면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라면 하도급대금 연동의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 예로, 국가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추가로 하도급법상 연동의무 이행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계약법상 대금조정이 하도급법상 연동의무를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추가의 연동의무 이행이 필요할 것임



1. 하도급법 해설

1.8.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금지)

1.8.1. 부당 경영간섭·보복 조치·탈법행위의 금지

■ 내용

- 부당한 경영 간섭의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불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봄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보복 조치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 제한, 거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 행위의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1. 하도급법 해설

1.8.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금지)

1.8.2. 부당 경영간섭 행위 사례

(주)포스코케미칼의 19개 협력사 경영간섭 행위 제재 사례('22.11. 4.)

- **법 위반 행위 : 부당한 경영간섭(하도급법 제18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등)***
 -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사항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함
 - * 하도급법상 위탁거래를 한 13개 협력사 대상 행위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도급법 우선 적용 규정 감안), 나머지 6개 협력사 대상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 **법 위반 내용**
 - (경영관리 기준 설정)

포스코케미칼은 '10년경부터 이 사건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 사안(인사, 자본, 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운용하여 옴

 -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 작업 실시
 -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 준수 여부 지속적 감시
 - (평가반영)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협력사 평가에 반영하여 불이익 부과 근거로 활용함

 - 평가결과 열위 업체로 2~3회 연속 선정 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물량 축소 가능, 임원 임기 및 연봉 기준 조정 가능
 - (임원인사 개입)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의 인사에 개입.

 -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협력사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속적 압박 진행
- **제재: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8천만 원(잠정)**



1. 하도급법 해설

1.8.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기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금지)

1.8.3. 보복조치 사례

(주)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자료 유용 및 보복조치 행위 제재 ('24.11.08.)

- (행위 내용) 하이에어코리아(주)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Weather Tight Damper)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이하 '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

한편, A사는 2022년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하였다가, A사가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하기로 예정되었던 제품을 하이에어코리아가 A사 기술을 유용하여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에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거절

결국 A사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같은 해 12월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이유로 자사 및 계열사,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하여 보복조치를 실행하. 이에 대하여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수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하였으나,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

보복조치로 A사와의 거래를 단절한 이후 하이에어코리아는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2023년 2월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게 제공하여 동일한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A사의 기술자료를 재차 유용

이외에도 하이에어코리아는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의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

- (제재) 하이에어코리아(주)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기술자료 폐기명령 및 보고명령) 및 과징금 총 26.48억원 부과,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1. 하도급법 해설

1.9. 하도급법 위반 시 제재

1.9.1. 상세 제재 내용

제재 유형	내용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	- 공정위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특약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를 명령 가능 -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공공입찰 참가 제한	-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그 위반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벌점을 부과 - 과거 3년간의 누산 벌점이 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 참가 제한(5점)·건설법상 영업정지(10점) 요청 가능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경고,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 4점 초과한 자는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로서 공정위가 그 명단을 의무적 공표
과징금	- 발주자·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24.05.28.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미지급 등 위반행위 자진시정 시 최대 70% 과징금 감경 가능
형사처벌	-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아래 벌금 대상 규정위반 외 원사업자 의무사항 위반 시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행위 금지 규정 위반 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당 경영간섭·탈법행위 금지 규정 위반 및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손해배상	- 하도급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생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외 - 다음 경우는 실제 발생 손해의 3배 미만 범위에서 배상책임 부담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 위탁취소/수령 지연·거부,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 기술자료의 유용·유출/보복조치 ※ '24.08.28. 하도급법 개정 시행으로 기술유용 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

II. 상생협력법 해설

2. 상생협력법 해설

2.1 상생협력법 개요

2.2 의무 및 금지행위

2.3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2. 상생협력법 해설

2.1. 상생협력법 개요

▪ 의의

- 목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위수탁거래에 적용됨

▪ 주요 개념

구분	내용
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
수탁 · 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 ※ 제조 · 가공위탁 · 수리위탁 · 건설위탁 · 용역위탁을 의미하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보다 범위가 넓음



2. 상생협력법 해설

2.2. 상생협력법상 의무 및 금지행위

구분	내용
약정서, 수령증 발급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 지급 방법, 지급기일, 검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함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함
납품대금 연동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목적물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대로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비밀유지계약 체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기술자료 제공 목적 및 범위, 비밀유지의무 내용,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함
납품대금 지급	- 위탁기업은 납품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대금지급기일로 봄 -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검사 및 불합격 통보 의무	위탁기업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해 수탁기업 납품 물품을 신속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함
납품대금 결정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아서는 안됨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해서는 안됨
발주	-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해서는 안됨 -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서는 안됨
기술자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됨 -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제28조의11 제1항 신설)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 물건·설비의 폐기·제거 등의 청구(제28조의11 제2항 신설)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 가능 ※ 위 신설 금지청구권 제도 '24.12.11. 시행



2. 상생협력법 해설

2.3. 상생협력법 위반 시 제재

3배 손해배상(기술유포의 경우 5배까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유포하거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금지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기술유포의 경우 5배까지 가능)

공정위에 대한 조치요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입찰참가자격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형사 처벌

-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의 임치등록을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소기업부장관 시정명령 불이행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그 대표자 등과 함께 처벌

과태료

- 일시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상생협력법 해설

2.4.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안내

■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요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이란 협력업체가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대로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2022.12.08. 국회 본회의 통과
 - ✓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23.07.04. 시행
 - ✓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 2023.10.04. 시행
- 하도급법: 현재 관련 법안 개정안 국회 논의 중
-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현재 공정위, 중소기업청의 하도급·위수탁 거래 관련 최대 중점 추진 사항

■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내용

- 물품등 제조 위탁 시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 부과
 - ✓ ‘주요 원재료’: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써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 ‘조정 요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 ✓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
-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음.
 - ✓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함
- 탈법행위 금지: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수탁기업의 책임질 사유 없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 금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

III. 공정거래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안내
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 2.1. 거래 이전 ~ 계약 체결 단계
 - 2.2. 계약 수행 단계
 - 2.3. 대금 지급 ~ 계약 종료 단계
3.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 3.1. 상생협력 분야



1. 체크리스트 안내

- 본 장의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발생 가능한 법규 위반 Risk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련 업무를 수행하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장의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시어 본인의 업무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사후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해당 체크리스트는 임직원의 자율점검을 위한 기본적인 Check - Tool 이며 그 결과가 곧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법무부서에 문의하시어 최종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받아 처리 바랍니다.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신 후 해당 체크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이슈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jangsw@Hanwha.com) 앞으로 체크리스트 체크 결과 및 검토 요청 사항, 간략한 사실관계, 질의 사항 등을 송부하여 주시면 검토 후 의견 및 향후 필요 절차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2.1. 거래 개시 이전 ~ 계약 체결 단계 자율점검

2.1.1. 거래 개시 이전 단계

구분	점검 항목
하도급 거래 해당 여부	• 해당 거래가 매입계약이고,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 해당 거래가 단순 상품 내지 상용품의 납품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 해당 거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 거래인지?
	– (건설 하도급) 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제조 하도급) 물품제조·판매·수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을 위한 물품(범용품, 상용품 제외)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용역 하도급)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자(용역업자)가 자신의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 (수리 하도급) 수리업자가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거래

2.1.2. 계약 체결 단계

구분	점검 항목
사전 서면 발급	• 업체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또는 당사가 업체에 업무를 지시하기 이전에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및 대금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기명날인을 완료한 계약서면이 발급되었는지?
부당특약 설정 금지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였는지?
부당특약 설정 금지	• 공정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하도급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서 내에 법령 등에 따라 당사가 부담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 등과 같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당사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는지?
건설하도급 지급 보증	• 해당 하도급 거래가 건설 하도급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 되었는지?



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2.2. 계약 수행 단계 자율점검

2.2.1. 계약 수행 단계

구분	점검 항목
선급금의 지급	당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되었는지?
부당위탁취소/수령거부	위탁(발주) 이후 이를 임의로 취소(계약해지, 발주취소 등) 또는 변경(발주량 감축 등)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수행하여 납품한 위탁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였는지?
부당 결제 청구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귀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물품 구매대금이나 장비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당사가 구입 또는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수급사업자에게 귀사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기술자료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한 경우 계약체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기술자료를 요구 시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사전 협의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양 당사자 기명날인 완료) 하였는지?
	기술자료 수령 전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보유 임직원 명단 등을 기재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였는지?
하도급대금 조정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증액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증액되었는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였는지?
경영간섭	하도급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 경영에 간섭하거나, 수급사업자에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해외 수출 제한·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한 거래 제한·당사/당사 지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정당한 사유 없는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 요구 등의 행위를 하였는지?



2.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2.3. 하도급대금 지급 ~ 계약종료 단계 등 자율점검

2.3.1. 하도급대금 대금 지급 단계

구분	점검 항목
하도급대금 지급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용역 수행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었는지?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지연이자 / 어음수수료 등 지급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가 어음교부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
	• 하도급대금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서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지급되었는지?
부당한 대물변제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당사 어음 또는 수표 부도, 은행 당좌거래 정지,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등)이 없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지?

2.1.4. 계약 종료 단계

구분	점검 항목
검사결과 통지	• 납품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방법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목적물이 납품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통지되었는지?
부당반품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반품하였는지?
부당 감액	•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을 위탁할 당시 정했던 하도급대금을 이후에 감액하여 지급하였는지?

2.1.5. 기타 - 분쟁 발생 시

구분	점검 항목
불이익 제공 등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정신청 또는 조사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우회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 하였는지?



3. 상생협력법 체크리스트

3.1. 상생협력 분야

구분	점검 항목
계약 체결	- 수탁기업에 대한 제조 등 위탁시 위탁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했는가? - 수탁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기술자료 및 비밀유지의무의 주요 내용이 기재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는가? - 납품 대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게 정하지는 않았는가?
거래 과정	- 수탁기업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발주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중단하지는 않았는가?
대금지급 및 검수	- 수탁기업 납품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사기준을 바탕으로 신속히 검수하였는가? - 수탁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물품 등의 수량을 거부하지는 않았는가?

IV. 공정거래 관련 법규

1. 하도급법 및 관련 법규
2. 상생협력법 및 관련 법규

IV 공정거래 관련 법규



I II III IV

1. 하도급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 부당특약 심사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2. 상생협력법 및 관련 법규

※ 법규 클릭 시 해당 법규로 이동

구분	법령명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지침	• 수탁, 위탁거래 공정화지침
	• 수탁·위탁거래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효행위 심사지침

End of document

- 발행부서: 한화시스템(주) 컴플라이언스팀
- 개정판 발행연월: '25.12.

※ 본 자율준수 편람의 무단 복제·배포·수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본 자율준수 편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담당자 (jangsw@hanwha.com/02-729-4929)앞으로 문의 바랍니다.